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6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0년 6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0. 6. 15)
상정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수과장 배덕기)

□ 제안이유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가산금 적용기준과 소멸시효가 상수도요금과 상이하야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와 형평에 맞게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가산금 적용기준 조정(안 제21조).

- 1) 100분의 5 일괄 징수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고, 1개월 이내 완납한 때에는 일할계산으로 세분화함.
- 2)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함. 다만,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함.

나.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른 3년으로 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5년으로 함(안 제32조의2 신설).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5호 중 “야기할”을 “일으킨”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를 “간사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범위 안에서”을 “범위에서”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가산금) 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완납한 때에는 체납액의 $\frac{3}{100} \times 12$ 개월 \times 연체일수 \div 365일

2. 납기를 1개월 이상 경과한 때에는 체납액의 $\frac{3}{100}$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고지서로 한다.

③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3항은 체납된 요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소멸시효)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 163조에 따른 3년으로 한다. 다만, 지하수이용부담금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8호
의결년월일	2010. 6. 18 (제161회)

제출년월일 : 2010. 6.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가산금 적용기준과 소멸시효가 상수도요금과 상이하야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와 형평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가산금 적용기준 조정(안 제21조).

- 1) 100분의 5 일괄 징수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고, 1개월 이내 완납한 때에는 일할계산으로 세분화함.
- 2)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함. 다만,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함.

나.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른 3년으로 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5년으로 함(안 제32조의2 신설).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5호 중 “야기할”을 “일으킨”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를 “간사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범위 안에서”을 “범위에서”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가산금) 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완납한 때에는 체납액의 $\frac{3}{100} \times 12$ 개월 \times 연체일수 \div 365일

2. 납기를 1개월 이상 경과한 때에는 체납액의 $\frac{3}{100}$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고지서로 한다.

③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3항은 체납된 요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소멸시효)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 163조에 따른 3년으로 한다. 다만, 지하수이용부담금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생략)</p> <p>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할 경우</p> <p>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u>통할한다</u>.</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u>사유로</u>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 ⑤ (생략)</p> <p>⑥ <u>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u></p>	<p>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u>일으킨</u> -----</p> <p>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 ----- <u>총괄한다</u>.</p> <p>② ----- <u>사유</u> <u>로</u>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간사는</u> ----- ----- ----- -----.</p>

현행	개정안
<p>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수당 등) ----- ----- --- <u>범위에서</u> ----- ----- ----- -----.</p>
<p>제21조(가산금)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p>	<p>제21조(가산금) 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완납한 때에는 체납액의 $\frac{3}{100} \times 12\text{개월} \times \text{연체일수} \div 365$ 일</u> 2. <u>납기를 1개월 이상 경과한 때에는 체납액의 $\frac{3}{100}$</u> <p>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고지서로 한다.</p> <p>③ <u>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④ 제3항은 체납된 요금의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2조의2(소멸시효) 지하수이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른 3년으로 한다. 다만, 지하수이용부담금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5년으로 한다.</p>